

「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
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읍 국가산업4단지 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피해보상이 완료되고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이 완료되고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12년 9월 27일 국가산업4단지 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의 피해보상 등을 위해 2012년 11월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민 및 기업 등에 총 378억 원의 피해보상액이 지급되었음. 구미시가 원고이며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을 피고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보상 집행액 378억 원의 60%인 227억 원이 조정 결정되어 확정채무 30억 원, 채무변제금 197억 원으로 2014년 8월 결정되었음.
- 따라서, 본 조례는 2014년 8월 이후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.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 등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